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등록 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제1조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등록

1. 자동차경기를 개최하려고 하는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는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의 국제스포츠 법전과 그에 기초한 KARA의 국내경기규칙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KARA에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은 본 규정 제3조에 따라 KARA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무국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 하였을 경우 이유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본 규정의 각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또는 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무국의 결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2조 프로모터, 오거나이저의 권한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는 국내경기규칙 제56조, 제62조, 제63조에 의거하여 경기를 개최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 프로모터는 협회에 등록된 프로팀이 출전하는 2개 클래스 이상의 국내 및 국제 경기를 주최할 수 있다.
2. 오거나이저는
 - (1) 협회에 등록된 프로팀이 출전하는 경기 중 1개 클래스로만 이루어진 국내 경기를 주최 할 수 있다.
 - (2) 협회에 등록된 일반팀(4x4팀, 카트팀 등)과 아마추어 개인들이 참가하는 국내 경기를 주최 할 수 있다.
 - (3) 단 국제 경기는 주최할 수 없다.

제3조 프로모터, 오거나이저의 신청자격

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에 갖는 법인
2. 공인경기를 주최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제반 규칙에 정통했다고 KARA가 인정한 자가 1명 이상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인경기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당해 년도 경기운영에 대한필요한 30%에 상당하는 자금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 가 인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단체

제4조 신청서류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소정의 신청서(사무실 위치, 직원명부, 대회주최경력 기재)
- 사업자 등록증(법인, 일반 사업자, 등록팀)
- 당해 년도 경기운영계획서
- 전기 재무제표 1부 (신규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대표자 인감증명 1부
- 대표자 사진 1매
- 기타 KARA가 요구하는 서류

제5조 프로모터, 오거나이저의 신청

- 프로모터 및 오거나이저 신청은 KARA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 직접 제출한다.

제6조 심사

접수된 등록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경기 주최능력과 운영능력
- 제반 규칙의 준수와 의무 이행의 실행 능력
-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프로모터, 오거나이저의 자격 제한

KARA는 등록을 신청한 프로모터, 오거나이저의 자격을 심사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경기의 횟수, 경기의 명칭, 종류, 경기 카테고리, 경기 클래스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등록비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등록을 신청한자는 KARA가 등록을 허가함과 동시에 KARA가 정한 등록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프로모터 등록비 : 원

오거나이저 등록비 : 원 (갱신비 500,000원)

본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등록비는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자격 상실 및 취소 시 반환되지 않는다.

제9조 유효기간 및 연장

- 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은 프로모터의 자격 유효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매년 1회 이상의 공인경기를 개최했을 시 자동 연장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공인대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경우 KARA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일정기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프로모터 자격이 일시 정지된 자가 공인대회를 개최할 시에는 KARA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로부터 등록을 허가 받은 오거나이저의 자격 유효기간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갱신비를 납부했을 시 자동 연장 된다.

제10조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자격의 상실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KARA는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개최하고자 한 경기를 취소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매년 한 경기도 개최하지 않았을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로서의 활동이 전혀 없었을 때
5. 타 프로모터, 오거나이저의 업무 및 경기 개최에 피해를 가할 경우
6. 경기의 준비 또는 경기 후 처리 및 해당 경기의 공인을 이용하여 지역 및 일반인에게 인적, 물적, 재산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7. 및 FIA의 명예나 권위를 실추 하거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8. 모터스포츠 일반의 이익을 저해하였을 경우
9. 기타 KARA 사무국에서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10. 오거나이저의 경우 해당 년도 갱신비 납입이 없을 시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
11. 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기를 개최할 경우 국내경기규칙 제166조, 제167조에 의거한 벌칙이 부여 될 수 있다.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로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등록신청서에 기재,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 사유를 변경 일부터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전

1. 공인경기를 주최할 자격을 갖는다. 단, 사무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2. 의 국내 스포츠캘린더에 기재, 등록할 수 있다.
3. 프로모터가 국제 경기 개최시 FIA 국제 스포츠캘린더 등록 신청 자격을 갖는다.
4. 로부터 모터스포츠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5. 선수 라이선스 국내 A,B 및 공인 심판원 B1의 취득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6. 공인경기의 개최에 관하여 등록팀, 단체, 프로모터, 오거나이저 상호간의 협조를 하도록 한다.

제13조 벌칙

프로모터, 오거나이저는 FIA 국제스포츠법전과 국내경기규칙, 동 부칙, 경기 특별규칙, 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경기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 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국내경기규칙 제164조, 제166조 참조).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